PL과 업, 장물, 공급한 제조물

글 · 이현수 상무 (주)남양키친플라워

〈 목 차 〉

1. 자본주의
2. 민주주의
3. 행복론
4. 생활수준
5. 생활구조
6. 가계
7. 문화산업론
8. PL :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9. PL에서 업의 이해
10. PL과 장물

1. 자본주의(資本主義)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란 자본이 원칙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제반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력의 고용이 주종관계이었던 봉건제도와는 달리 자유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 자본의 사회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통상적으로는 국가의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하며,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가격 메카니즘이 자원배분의 신호가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관계의 모순이 격화함과 동시에, 집중과 독점이 촉진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기적 공황이 심각해짐으로써 이미 발달한 자본주의국가도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까지 이 예언은 들어맞지 않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서 금세기에 걸쳐 주식회사제도가 보급되고, 대기업체제가 지배적으로 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슘페터에 의하면 이에 따라 관료제화(官僚制化)로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케인즈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민간에의 정책적 개입도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2. 민주주의(民主主義)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역어로 어원은 그리스어의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ia의 합성어로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결국 다수 인민이 지배를 뜻하는 정체를 뜻하며, 이것은 군주정치와 귀족정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17~18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록(John Locke : 1632~1704)과 룻소 등에 의하여 사상적 기초가 부여된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거쳐 19세기 후반에는 유일한 정통적 정치원리로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의 민주주의는 재산과 성별(性別)에 의해 극히 한정된 이른바 〈소수자의 데모크라시〉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보통 선거의 실현으로 인하여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다수지배는 결국 의회 내의 다수당 지배를 뜻하게 되고, 행정국가에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그림의 떡으로 형해화(形骸化)하는 경향에 있다.

3. 행복론(幸福論)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의 논의이다. 행복감에는 감각적·생명적·정신적 각양각색의 양상이 있고, 또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냐, 개인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 하는 구별도 있다. 또 흔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도덕적인 선(善)과 행복과의 상관관계이다. 무엇이건 간에 행복론은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생활수준(生活水準)

생활표준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매일 실제로 행하고 있는 평균적 내지 표준적 생활정도이다. 즉,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 또는 여가 이용상태 등에 따라 수량적으로 헤아리는 생활의 내용이나 정도를 말한다.

지표로서 통상적으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쓰인다. 소득수준은 1인당 화폐소득을 생계비지수로 나눈 실질소득이고, 소비수준은 개인소비지출의 총액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실질소비지출이다. 이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량화할 수 없는(uncountable)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5. 생활구조(生活構造)

개인 또는 가족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의 체계를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여러 조건하에서,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한정지어지는 것으로서 파악한 개념이다. 그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노동력의 재생산과 가계(家計)와의 균형을 배후의 요인에서 파악하는 경제학적 분석이 있고, 둘째 개인의 생활 속에 통합되어 있는 집단의 누적적(累積的) 파악, 셋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행동 양태의 종합적 파악 등이 있다.

6. 가계(家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수지(收支)의 상태로 기업과 더불어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소비지출액으로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행동원칙이 한계효용(限界效用) 균등의 법칙이다. 이 행동원칙으로부터 수요곡선이 도출(導出)되고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이론이 전개된다. 최근엔 이 가계의 합리적 행동이론에 제약을 가져오는 의존효과(依存效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벌이는 선전광고 등으로 영향을 받아서 소비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환기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주권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7. 문화산업론(文化産業論)

상류지향적(上流指向的) 내지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추구의 산업경향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문화산업론(文化産業論)이다. 산업의 발달이 고도화(高度化)함에 따라 모든 회사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필요에 밀착된 신제품개발을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 고객이 필요로 했던 것은 텔레비전·자동차·주택·자녀교육 등이었지만 차차 상류지향이 되어갔고 신고급문화의 창조에 힘을 쓰게 되었다. 즉 서비스화(化)·고급화·정서화 등의 현상을 빚었는데 이런 현상을 통털어 문화산업화라 칭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의 선진공업국은 개인소득의 부진과 국민의 근로의욕 저하로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매력있는 신상품과 신생활양식의 제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불황의 원인은 이를테면 신문화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른바 문화산업론이다. 문화산업론에 의하면 신문화의 창조는 다음 신산업창조에 이어지고, 신산업발전으로 얻어지는 부의 축적은 또 다음의 신문화창조에 이어진다고 한다. 문화와 산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며, 또한 문화의 시대와 산업의 시대는 교대로 도래한다는 것이다.

8. PL :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공급(供給)이란 일정한 값으로 시장에 상품을 냄, 즉 판매자가 수요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과 교환하여 상품을 급부하는 것 또는 급부하는 수량을 말한다. 따라서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전적 의미로는 공급은 물건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교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시장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 또는, 그 제공된 재화(財貨)의 양이다.

급부(給付)란 금품을 주는 것인데, 법에서는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급부비(給付婢)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공신(功臣)에게 내리던 계집종을 말한다.

제공(提供)은 갖다 주어 이바지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숙식제공〉, 〈장소를 제공하다〉, 〈점심이 무료로 제공되다〉와 같이 쓰인다.

무상(無償)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무상원조〉와 같이 쓰이는데,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報償)이 있는 유상(有償)과는 대비된다.

이와관련하여, 일종의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형태를 무상교육이라 한다. 또 무상주배정(無償株配定 : no paid allotment)이 있는데 신주(新株)를 무상으로 주주(株主)에게 교부하는 것인데, 법정 준비금을 자본에 넣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또한 무상증자(無償增資)는 적립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배당 등의 출자와 같아, 자본의 법률상의 증가만을 가져오는 명목상의 증자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한쪽만이 급부를 행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가(對價)가 주어지지 않는 법률행위가 무상행위이다. 증여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또 무상주의가 있는데 배급이나 분배상(分配上)의 정책에 있어서 무상을 위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일정한 사법(私法上)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한 두 사람 이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契約 : contract)인데, 그 중에서 무상계약(無償契約)은 당사자간의 한편이 의무를 가질 뿐, 그 대가나 보수(報酬)를 받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贈與)나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이다. 이와 반대로 유상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매매나 고용계약 따위인데, 유상(有償)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引渡)란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는 것(delivery), 인수(引受)와 대비된다. 법적으로는, 점유물이나 범인 따위를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일(引渡日)이란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날인데, 법적으로는 점유한 물건이나 구속된 사람을 교부(交付)하는 날을 지칭한다.

엄밀히 말해서 법률에서는 인도(transfer)란 보통 물건의 점유의 이전을 가리킨다. 동산의 소유권 등의 물권변동의 성립과 대항요건이다. 물건을 인도하는 등의 현실적인 지배의 이전 외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되는 경우와 같은 간이의 인도도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출고(出庫)는 물품을 창고에서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출고품(出庫品)하면 출고된 물품이다. 또 곳집에서 꺼낸 물품의 양이 출고량

(出庫量)인데, 생산자가 생산품을 공장 등에서 시장에 낸 양이다.

또 유사한 의미로 출하(出荷)는 하물(荷物)을 내보내는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상품을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적출(積出)이라고도 한다. 국제무역에서 적출안내서(積出案內書)라면 선적통지서(船積通知書)를 말한다. 이를테면 출하가격과 같이 쓰이는데, 시장에 있는 상품의 수량을 적당히 유지시켜 시가(市價)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마케팅에서는 출하조절(出荷調節)이라 한다.

출품(出品)이란 전람회나 전시회 등에 작품이나 물품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판매가 아닌 진열(exhibition)의 목적으로 물건을 내어놓는 것이다. 〈물건을 내어서 팖〉의 출수(出售)라는 말이 있는데 근래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사전에는 없지만 출시(出市)라는 단어가 있는데, 판매하려고 시장에 물품을 내놓는 것으로 출하나 출고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다.

지금까지 공급, 급부, 제공, 무상과 유상인도, 출고, 출하, 출품 그리고 출시 등 여러 용어를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었다.

전문 8조와 부칙 2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간략한 법이다. 부칙 ②(적용례)가 있는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다.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제품을 공장에서 거래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방식에 공장도(工場渡 : ex factory, free at factory)가 있는데 이것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

9. PL에서 업(業)의 이해

업(業)은 불교의 기본적 개념의 하나인데, 범어(梵語) karman의 역어이다. 본래는 행위(act)의 뜻이다. 인과사상(因果思想)과 결합하여 업은 그 선악(善惡)에 따라서 과보(果報)를 주고, 죽음에 의하여서도 상실되지 않으며, 대대로 전하여 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고대 힌두교 철학책으로서 베다(veda) 성전(聖典)의 일부 《우파니샤드(Upanishad)》에서도 그 사상은 나타나 있어서, 윤회(輪廻)사상과 업감연기(業感緣起)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후 숙업(宿業) 사상과 운명론으로 발전하였고, 후에 인도와 중국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산스크리트어의 행위의 뜻에서 나온 카르마(karma)는 힌두교(敎)에서는 갈마(羯磨), 업(業)으로 번역된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혹은 인연을 의미한다. 그래서 숙명이나 속명론을 뜻하며, 사람·물건·장소에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적 분위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갈마는 특히 수계(受戒)나 참회(懺悔)할 때의 의식작업(儀式作業)인데, 이에서 멸죄생선(滅罪生善)의 힘을 얻는다. 그리하여 부처의 힘으로 현세(現世)의 죄장(罪障)을 소멸하고 후세의 선근(善根)을 돕는 것이다.

《카르멘(Carmen)》은 프랑스의 작가 메리메(P. Mérimée)가 쓴 소설인데, 1845년에 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젊은 군인 돈 호세(Don Jose)하사는 세빌(Seville)의 연초공장에서 상관을 죽인 아름다운 여공 카르멘을 체포하였으나 여자는 그를 유혹하고 도망한다.

카르멘에게 뜨거운 연정을 느끼고 번번이 번롱(弄)된 호세는 질투에 못이겨, 새로운 정부인 투우사 에스카밀로(Escamillo)의 개선을 투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카르멘을 살해하고, 끝내는 자수한다는 줄거리이다. 프랑스의 비제(G.Biget)가 이를 작곡하여 1875년 파리에서 처음 상연되었으며 명가극으로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업(業)은 직업(職業)을 뜻한

다. 불교에서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所行)이다. 이것이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또 전세(前世)에 지은 선악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現世)에서 받는 응보(應報)를 말한다. 여기서 갈마(karma)는 수계나 참회 때의 의식법이다.

순 우리말로서 업은 한 집안에 있어서 그 집의 살림이 그 덕이나 그 복으로 잘 보호되고 늘어간다는 동물, 또는 사람을 말한다.

Webster사전에서는 karma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어원 : Sans, a deed, act, fate, to make, fom 〉 shape, time

1. Buddhism, Hinduism - the totality of a person's actions in any one of the successive states of that person's existence, thought of as determining the fate of the next stage

2. loosely, fate ; destiny

직업(職業)은 관직상의 일을 뜻한다. 또, 일상 종사하는 업무, 생계를 세우기 위한 일인데,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 곧 생업(生業)이다. 줄여서 업(業)이라 한다.

그리고 자기 능력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다.

Webster사전에서는 occupation이란 단어의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that which chiefly engages one's time ; (one's) trade, profession, or business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 이것은 막스 베버가 1919년 겨울 뮌헨 자유학생동맹의 발기(發起)로 행한 공개강연을 적은 고전적인 저서이다. 1919년 간행되었는데, 국가를 합법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强制力)의 독점으로서 특징을 짓고, 정치는 이 국가권력의 분배와 유지 이전에 참가하는 노력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리고 봉건제로부터 근대적 중앙집권제로 이행하는 동안에 각종 직업정치가의 역할을 분석비판하였다.

또 직업정치가가 되려면 정열과 책임감과 관찰력이 필요하며, 정치에 있어서는 책임윤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논파하였다.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경제사학자인 베버(Max Weber ; 1864~1920)는 근대자본주의를 합리화의 과정으로서 파악하여, 경제·과학·종교·예술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종교사회학·근대사회론·국가론 등을 의욕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경제일원론에 대해 다양한 요인의 관련을 중요시하여 후에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과학적 인식과 실천적 가치판단의 혼동을 경고하는 가치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근대유럽에 있어서의 합리적 생활태도와 근대 자본주의 성립의 요인을 추구한 견해가 특히 유명하다. 그의 저서에 《세계종교의 경제윤리》, 《경제와 사회》와 《직업으로서의 학문》 등 다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었다. OECD가입국 중에서는 PL법을 시행하는 마지막 국가가 된다고 한다. 여하튼 우리 전기제품제조업체도 가일층 분발하여 품질에 신경을 써야할 때가 온 것이다. 전기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내구성을 높여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2000년 1월 12일자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이 제2조(정의)제3항에 제조업자의 정의가 되어 있다. 특히 가.의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것이다.

제조물의 제조업·가공업·수입업을 하는자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묻게 될 책임의 주체가 된다.

10. PL과 장물

중국 청대의 희곡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장생전(長生殿)》이 있는데 홍승(洪昇 ; 1645~1704)의 작품이다. 장장 모두 50막으로 되어있는데 1679년에 발표된 것으로, 일설에 의하면 1688년에 된 것이라고도 한다. 여하튼 《장한가(長恨歌)》와 《추우오동(秋雨梧桐)》 등에서 그 골격이 되는 본을 따왔다고 한다.

그리고 또 현종(玄宗) 황제와 양귀비(楊貴妃)의 사랑을, 양가(楊家) 일문의 영화와 안록산(安祿山)의 반란 등 당시의 당나라 왕조의 흥망을 배경으로 그렸다. 이 희곡은 문사(文辭)가 미려하기로 청대에서 으뜸가는 수작(秀作)이라고 일컬어지며, 《도화선(挑花扇)》과 병칭된다.

장생(長生)은 오래도록 사는 것으로, 불로장생과 같이 오래 살아 죽지 않음의 장생불사(長生不死)와 같은 뜻이다. 또 부처손을 장생초(長生草)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미나리과의 이년생 풀인 멧두릅을 지칭하는데 독활(獨活)이라고도 한다.

같은 음과 한자로 장생권은 조선 초기에 개국공신의 화상(畵像)을 모시던 곳인데 뒤에 사훈각이라 고치고, 태조의 어진(御眞)도 함께 모셨다가 나중에 없앴다. 또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태종이 이산(驪山)에 세운 이궁(離宮)이다. 뒤에 현종이 청화궁(靑華宮)으로 명칭을 고쳐 양귀비와 지내던 곳이다. 그러다가 뒤에 뜻이 바뀌어, 천자(天子)가 거쳐하는 곳이 되었다.

장생전(長生錢)은 중국 당대에 이자(利子)를 정하고 빌려 주던 절이 소유하고 있던 돈인데, 고질전(庫質錢)이라고도 칭한다. 간단히 말해서 당대(唐代) 사찰(寺刹)의 현대식 금융업의 일종이었다. 당나라 때의 사원은 귀족이나 부호들과 같이 황족들이 많은 장원(莊園)을 소유하였는데, 이른바 장원영주(領主)였다.

사찰의 장원은 귀족 호족(豪族)들과 같이 빈민들의 전답과 겸병(兼倂)과 내세(來世)의 공덕(功德)을 기대하는 희사(喜捨)를 토대로 하여 행하여졌다. 이러한 장원에 딸린 노비(奴婢)들을 경작에 사역시켜서 엄청난 수확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저장하기 위해 무진장(無盡藏)이란 창고를 세워 장물(藏物 : 간직하여 저장하여 둔 물건)을 자본으로 이식(利息)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교묘하게 식리(殖利)하였으니 이를 장생전이라 칭하였다.

그 때마다 물건을 담보(擔保)로 하였으며 빈민들은 한 때의 곤궁(困窮)을 모면할 수 있어 당장 편리하고 또 사원에서는 수익(收益)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장생전 경영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본전과 이자가 다시금 이자를 낳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으니 이를 무진재(無盡財)라고도 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무진회사(無盡會社)가 있었는데 상호신용금고의 전신이며 구칭이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무진(無盡)이란 〈다함이 없을 만큼〉, 〈매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무진등(無盡燈)이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이 잇달아 전파되어 다함이 없음을, 하나의 등불이 수없이 많은 등불을 켜는 불씨가 된다는데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무진장(無盡藏)은 한없이 많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덕이 넓어 끝이 없는 것을 지칭하는데, 갈고 닦고 닦아도 다함이 없는 법의(法義)이다. 즉 불교에서 무극(無極)의 덕을 포함하는 것을 이른다. 또는, 사찰의 기관(機關)을 일컬음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 사찰에 설치하고 시주금을 구제금으로 대출하여 그 이자를 사찰경비로 충당했다.

장부(帳簿)는 일정한 질서하에 거래를 기록한 부기(簿記)이다. 장부는 거래의 기록을 명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거래의 발생에 따라 그 일기를 기록하고 분개(分介)한다. 장부에는 주요

부(主要簿)와 보조부(補助簿)가 있다. 상법에는 10년 간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부는 분개장(分介帳)과 원장(元帳)의 두 가지로 나눈다. 복식부기에는 발생한 거래를 먼저 분개하고 그 분개를 계정계좌(計定計座)에 전기(轉記)한다. 이렇게 계정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래의 분개직능을 가진 분개장과 계정계산의 직능을 가진 원장은 복식부기(bookkeeping by double entry)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장부이다.

사전에서 정의가 부정한 방법 또는 범죄(犯罪)에 의하여 얻은 물건이 장물(贓物)인데,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타인 소유의 물품인데, 장품(贓品)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도둑질한 장물을 은닉해서는 안된다.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가 소위 장물죄(贓物罪)이다. 즉 장물을 숨겨두거나 고매(故買)함으로써 이루어진 **죄이다**. 또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 또는 운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장물아비다.

장물취득죄(贓物取得罪)란 장물을 유상(有償) 또는 무상(無償)으로 수득(收得)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죄의 한 형태이다. 또 장물양여죄(讓與罪)는 장물을 제삼자에게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득(gain)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죄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장물의 소재를 옮김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운반죄(贓物運搬罪)가 있다. 위탁을 받고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보관죄(贓物保管罪), 장물의 매매나 교환 또는 운반 혹은 보관 등을 매매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성립되는 죄가 장물알선죄(贓物斡旋罪)이다.

범죄행위로서 얻은, 이른바 장물(stolen articles)의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가 장물에 관한 죄이다. 장물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등을 하는 행위는 절도범 등의 본범(本犯)이 범죄 후에 그 불법 영득한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범의 범죄활동을 유발하거나 조장하여 주는 것이므로, 장물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형사정책상 중요시된다. 영득(領得)이란 자기나 제삼자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남의 재물을 취득(取得)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장물의 추구(追求)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고물상 영업자나 전당포 영업자에 대한 주의와 의무와 또 종래 장물매매 등에 있어서는 본범이 장물이라는 정(情 : 정황)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장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매수(買受)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장물죄에 관한 과실범을 새로 규정하여 업무상의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친족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減經) 또는 면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1일부터 드디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나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또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장물의 경우에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전의 유통관계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장물의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의 과정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장물아비나 마지막에 팔아먹은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이것도 저것도 불명확할 때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 같다.